

DDA 2005년 10월 농업협상 동향

DDA 농업협상에서는 주요국들의 각료급 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협상 그룹별 제안서가 분야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을 보면, 일부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 주요국 협상 동향

지난 10월 10일 미국 주최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AMS를 60% 감축하고 블루박스의 상한을 5%에서 2.5%로 낮추자는 제안을 내어놓았다. 이는 그동안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미국이 과감하게 입장을 변경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국내보조 감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EU가 시장접근분야에서 양보를 할 차례라며 EU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호주, 브라질 등 수출개도국들이 합세하여 EU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EU는 과거의 제안보다 과감한 감축안을 담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관세감축 구간을 30/60/90%를 기준으로 네 개로 나누고 최상위 구간에는 50%의 감축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EU의 제안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UR협상 결과에 따른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목표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EU를 비난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지난 19일에 열린 FIPs 회의에서는 시장접근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제안 제시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EU의 회원국들이 집행위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최근의 시장접근분야 감축안이 mandate를 넘어선다면서 지나친 양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함에 따라, EU는 이번 19일(수)에 개최된 FIPs 회의와 20일(목)에 개최된 Extended FIPs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 않고 병행주의 차원에서 NAMA와 서비스 협상에서의 진전을 촉구하기만 하였다.

FIPs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되자 농업위 비공식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브라질, 호주 등 수출국들이 EU가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며 EU를 압박하였다.

EU 집행위는 보다 큰 관세 감축안을 담은 새로운 제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혀 10월 29일과 11월 7일로 예정된 FIPs 회의에서는 EU의 제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 WTO 농업위원회 10월 회의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각료급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국간 합의 도출 여부에 여타 회원국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10월 농업위 회의에서도 각 국의 협상단은 FIPs 회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관망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다.

수입국 그룹 G10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가면서 입지가 심각하게 약화된 데 대해 다소 의기소침하였으나 비공식 전체회의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나치게 큰 양보를 요구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veto group이 될 수도 있다며 강변하였다.

한편 농업주간 말미에 열린 비공식 전체회의에서는 ACP그룹 (African-Caribbean-Pacific Group)이 시장접근분야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수출 개도국 그룹 G20과 호주가 각각 민감품목 관련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G20의 제안서에서는 민감품목이 전체 관세라인의 1%를 넘지 않아야 하고, 민감품목의 수가 많을수록 이를 보상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일반 감축공식과의 괴리가 클수록 TRQ 증량폭이 커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호주는 매우 제한된 수의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이 현행 소비량의 6.5%~10.5%가 되도록 제안하였다.

3. 시장접근분야 주요 그룹별 제안

10월 현재까지 제출된 협상 그룹별 시장접근분야 제안을 보면, 관세구간을 네 개로 나누고 감축방식을 선형방식으로 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10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협상 그룹들은 관세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룹별 제안서를 살펴 보면, 미국은 관세율 20/40/60%를 기준으로 네 구간으로 나누고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을 90%로 설정하는 한편 75%의 관세 상한을 제시하여 일반 관세감축공식에 따라 감축을 하더라도 75%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75%까지 감축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제안 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1. 미국의 일반 관세감축 제안

	선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및 감축률	0~20%	55~65%
	20~40%	65~75%
	40~60%	75~85%
	60%~	85~90%
	관세상한	선진: 75%(개도: 100%)
감축방식	progressive cut	

주: 개도국 감축구간 및 감축률은 미제시.

EU는 그동안의 입장보다 과감한 시장 개방폭을 제시하였으나 EU의 제안에 따른 경우, EU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24% 밖에 되지 않아 UR 협상 결과 선진국들이 평균 36% 감축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수출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표 2. EU의 일반 관세감축 제안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및 감축률	0~30%	20%	0~40%	선진국의 2/3
	30~60%	30%	40~80%	
	30~90%	40%	80~120%	
	90%~	50%	120%~	
관세상한	100%		150%	
감축방식	선형 방식		선형 방식	

G20은 미국과 EU의 의견을 절충한 형태의 감축안을 제시하여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표 3. G20의 일반 관세감축 제안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및 감축률	0~20%	45%	0~30%	25%
	20~50%	55%	30~80%	30%
	50~75%	65%	80~130%	35%
	75%~	75%	130%~	40%
관세상한	100%		150%	
감축방식	선형 방식		선형 방식	

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 그룹인 G10은 아래와 같은 감축안을 제시하고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가면서 수입국의 의견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표 4. G10의 일반 관세감축 제안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및 감축률	0~20%		0~30%	
	20~50%		30~70%	
	50~70%		80~100%	
	70%~		100%~	
관세상한	없음		없음	
감축방식	option 1: 선형 방식 option 2: 제한된 신축성을 가진 선형 방식		option 1: 선형 방식 option 2: 제한된 신축성을 가진 선형 방식	

주: 감축률은 미제시

시장접근분야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민감품목의 수를 전체 관세 세번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면 EU는 전체 관세 세번의 8%와 감축률을 최대 3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G20과 호주가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표 5. 민감품목 관련 제안 비교

	G20	호주
선정	HS x단위 기준 전체 세번의 1% 미만	제한된 수의 관세라인
대우: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수가 늘어날수록 보상 정도가 커짐. -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일탈이 심할수록 TRQ 증량 폭 커짐. - 민감품목에도 관세 상한 설정 - 일탈 정도는 일반 관세감축공식을 따랐을 경우의 최종 양허세율(a) 과 민감품목일 경우의 양허세율 (b) 의 차이로 판단. - $b-a < 30\%$ - TRQ 신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증량으로 관세 감축이 면제 되는 것에 반대 - 높은 관세구간에 해당되는 품목일 수록 TRQ 증량폭 커짐. - TRQ 증량 기준: 현행 소비량의 []% - TRQ 신설 없음.
대우: 관세감축 및 TRQ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증량은 MFN 기준 -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최근 3개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6%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터 밖 세율은 일반 관세감축률의 60% 만큼 감축 - TRQ 증량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간(최하위): 국내 소비량의 7.5% 증량 · 2구간: 8.5% 증량 · 3구간: 9.5% 증량 · 4구간(최상위): 10.5% 증량 - TRQ 물량이 현행 국내 소비량의 25%를 초과하는 품목은 쿼터 밖 세율을 일반감축률의 60% 수준으로 감축하고 TRQ를 정해진 수준의 50%만 증량 -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이행기간의 50%를 더 연장하거나 또는 · 이행기간 중 상반기에 총 감축률의 1/4을 이행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잔여분 감축(back loading)

표 5. 계속

	G20	호주
개도국 우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품목의 수: 선진국의 3/2 - TRQ 증량폭: 선진국의 2/3 이하 - TRQ 증량 기준 : 국내 소비량-자가 소비량 - 현행 TRQ 품목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은 같되 일반 관세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 또는 · 일반 이행기간 보다 짧은 기간동안 $b-a < 45\%$인 $b\%$ 감축, 또는 ·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연장, 또는 · 기타 옵션(향후 논의) - LDC는 TRQ 증량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보다 많은 수의 민감품목 선정 -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 - 선진국 TRQ 증량폭의 2/3 수준으로 TRQ 증량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